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오승연 연구위원

- 과거 우리나라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조건 변경 없는 전부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결정된 정리 방식을 따름
 - 국제적으로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에 장기계약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청·파산 방식이 아닌 계약이전 (Portfolio Transfer)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요국은 보호한도 상한 설정, 공동 부담 등의 제도를 운영함
 - 보호한도 상한은 일정금액 이상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공동부담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비율만큼만 보장하는 방법임
- 주요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다수의 소액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계약이전 시 보험금의 총한도를 상품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보호하고 있음
 - 일본은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이전 시 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보호함으로써 모든 계약자가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하여야 함
 - 영국은 장기보험은 100%, 일반보험의 의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사망 또는 장애보험은 100%, 그리고 일반보험의 기타계약은 90% 보장함
 - 캐나다는 보호한도와 일정비율 보장을 혼합하여 소액가입자는 100% 보장하는 대신 고액 가입자는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함
- 주요국의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계약자 다수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는 보호한도 방법을 사용함
 -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큰 일본의 경우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공동부담 방식을 채택함

1. 검토배경



- 과거 우리나라는 부실 생명보험회사 정리 시 보험계약의 조건 변경 없는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고금리 보유계약의 부담은 인수 보험회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이전된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은 반면 인수보험회사는 금리부담을 모두 책임지게 되어 경영에 부담을 초래함
 - 계약이전 시 보장담보를 전부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원칙에 의해 결정된 정리 방식을 따름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함¹⁾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청·파산 방식이 최소비용일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는 한 청·파산 절차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함
- 국제적으로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장기계약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청·파산 방식이 아닌 계약이전(Portfolio Transfer)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기능 중단이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임
 - 국제금융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도 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을 권고함
-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원칙에 부합하면서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정리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해외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이전 제도를 살펴본 후 계약 이전 제도 정비 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2. 계약이전 제도의 검토사항



■ 보험회사 부실 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²⁾

-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평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험소비자는 고금리 보장 상품 등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미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이러한 소비자 행동을 오히려 이용하여 더 위험한 상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에 건전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건전한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한도 상한 설정, 공동부담 등이 있음
 - 보호한도 상한을 설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보호하지 않는 대신 다수의 소액 계약자는 100% 보호함
 - 공동부담은 계약자에게 일정한 비율만큼만 보장하는 방법으로 모든 계약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요구함
- 보호한도 방식 또는 공동부담 방식에 따라 보호대상 계약자의 범위가 결정됨
 - 보호한도 방식은 취약한 계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반면 공동부담 방식은 계약자 간 형평성에 유리함
-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부실 시 5천만 원 보장한도 내에서 100% 보장하는 보호한도 상한 설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OECD(2013),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 Selected Consideration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1, OECD Publishing

3. 계약이전 제도의 주요국 사례



가. 보호한도 방식

■ 미국은 다수의 소액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계약이전 시 보험금의 총한도를 상품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보호하고 있음

-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300,000달러, 해약환급금은 100,000달러까지 보호함
- 건강보험은 보장 담보에 따라 100,000달러에서 500,000달러까지 보호함
 - 입원, 수술 보험금(Major Medical or Basic Hospital, Medical and Surgical Insurance Policy Benefits)의 보호한도는 500,000달러임
 - 소득보상보험금 보호한도는 300,000달러임
- 보험금(Benefits) 유형별로 인당 적용하여 사망보험이 2개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함
 - 사망보험금 1개와 연금이 1개인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서 보호한도를 적용함

〈표 1〉 미국 NAIC Model Act의 생명보험 보호한도

(단위: 달러)

구분		보호한도
사망보험 (Life Insurance)	사망보험금(Death Benefits)	300,000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s)	100,000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Major Medical or Basic Hospital, Medical and Surgical Insurance Policy Benefits	500,000
	장기요양보험금(Long Term Care Insurance Benefits)	300,000
	소득보상보험금(Disability Insurance Policy Benefits)	300,000
	기타 건강보험금(Other Health Insurance Benefits)	100,000
연금 (Annuity)	연금액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Annuity Benefits)	250,000
	해약환급금	250,000

자료: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s 홈페이지

나. 공동부담 방식

■ 일본은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이전 시 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보호함으로써 모든 계약자가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하여야 함

-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이전 시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장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은 100% 보장하나,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경우 3개월 경과 후 80%, 해약환급금은 80% 보장함
-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90%까지 보장함

〈표 2〉 일본의 보상대상계약 및 보험종류별 보상비율

보상대상계약		보상비율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
손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	100%	
	자동차보험	(1) 도산 후 3개월간: 100% (2) 3개월 경과 후: 80%	80%
	화재보험		
	기타 손해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단기상해보험 특정해외여행상해보험	90%	90%
	연금지급형적립상해보험 재선형성저축상해보험 확정각출연금상해보험		
	기타 질병·상해보험		90%(적립형보험의 적립부분: 80%)
생명보험	생명보험*	도산 시점 책임준비금의 90%	

주: *高예정이율계약상품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90% - 1/2(5년간의 매년 예정이율 - 책임준비금적립이자율)

자료: 정봉은(201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보험연구원

■ 영국은 2010년 계약자 보호방식을 금액방식과 비율방식의 절충형에서 비율방식으로 전환함

- 2010년 이전까지는 일반보험의 의무보험은 100% 보장하나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임의보험은 2천 파운드까지 100% 보장하고 나머지 잔존액은 90%까지 보장함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는 일반보험의 의무보험 100%, 임의보험 90% 그리고 장기보

험은 청구금액의 90%를 보장함

- 2015년 7월 3일 이후 장기보험은 100%, 일반보험의 의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사망 또는 장애보험은 100%, 그리고 일반보험의 기타계약은 90% 보장함

〈표 3〉 영국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보호한도

구분	2010. 1. 1 이전	2010. 1. 1 ~ 2015. 7. 3	2015. 7. 3 ~ 현재
장기 보험	2천 파운드까지 100% 나머지 잔존가치의 90%	청구액의 90%	청구액의 100%
일반 보험	의무보험: 100% 임의보험: 최초 2천 파운드 100% + 잔존 90%	의무보험 100% 임의보험 90%	의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사망 또는 장애: 100% 기타 계약 90%

다. 혼합 방식

- 캐나다는 보호한도와 일정비율 보장을 혼합하여 소액가입자는 100% 보장하는 대신 고액 가입자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함

-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2십만 달러, 사망보험 해약환급금, CI와 건강보험의 보험금은 6만 달러, 소득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월 2천 달러까지 100% 보장함
-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보장한도와 보험상품 약정금액의 85% 가운데 큰 금액까지 보장함
- 실질적으로는 보호한도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호함으로써 계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임

〈표 4〉 캐나다 생명보험 계약자 보호기구의 보호한도

(단위: 캐나다 달러)

100% 보장한도	추가보장	보호대상
200,000	100% 보장한도와 보험상품 약정금액의 85% 가운데 큰 금액까지 보장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60,000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CI 보험금 ·건강보험금 ·Segregated Fund Policy
2,000/월		·소득보상보험(DI) ·장기요양보험(LTC) ·지급단계(Payout) 연금
100,000	No	·적립단계(Accumulation) 연금

자료: Assuris 홈페이지

4. 시사점



■ 주요국의 부실 보험회사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계약자 다수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는 보호한도 방법을 사용함
 - 캐나다의 경우 기본적으로 95%의 계약자가 100%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
 - 영국은 비율방식을 사용하지만 다수의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일부는 100% 보장하여 다수의 계약자가 보호됨
 - 우리나라도 보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 초기에 생명보험 계약건수의 99%가 보호됨³⁾
- 고금리 상품에 대한 피해가 큰 일본의 경우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공동부담 방식을 채택함
 - 일본은 이차역마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계약이전 시 예정이율도 변경하여 계약자에게 일정 손실을 전가함 **kiri**

3) 류건식·김해식(200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